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78호
2025. 7. 14.(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705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9706호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9707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9708호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	11
제9709호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15
제9710호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19
제9711호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22
제9712호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9713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9714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9715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9716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제9717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9718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9719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제9720호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41
제9721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9722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9723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9724호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9725호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9726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9727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9728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9729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9730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9731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9732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9733호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제973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9735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9736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9737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9738호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제9739호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9740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9741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9742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9743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9744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9745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9746호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9747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제9748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제9749호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9750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9751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제9752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111
제9753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6
제9754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9755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120
제9756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9757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9758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6
제975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8
제9760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제976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제976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34
제9763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38
제9764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0
제9765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2
제9766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44
제976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46
제9768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8
제9769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0
제9770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2
제9771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4
제9772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6
제977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제9774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0
제9775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62
제9776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65
제9777호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조례	168
제9778호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71
제9779호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74
제9780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7
제9781호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80
제9782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2
제9783호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4
제9784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7
제9785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9
제9786호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2
제9787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5

[규 칙]

제4711호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99
제4712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6
제4713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8
제4714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11

자치법규 등**[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705호****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변리사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를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현행 법률 전문가 중심의 입법·법률고문만으로는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쟁점에 대한 자문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법·법률고문의 다양성 및 기술 분야의 검토 역량을 강화하고자 변리사를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입법·법률고문 위촉 대상에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를 포함(제4조제1항제2호 신설)
- 나.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비용의 처리 규정을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제10조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706호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력이나 강제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증가하는 주취자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신응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4월 서울시 동부병원에서 ‘보호조치통합지원센터’ 개소하면서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상황
- 이에 주취자 보호에 대한 인권 존중 및 인권 침해 발생 방지를 위한 기본원칙을 신설해 보호 지원을 위한 규정을 강조하고, 주취자 보호설치 및 운영 시,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2. 주요내용

- 가. 주취자 보호에 대한 기본이념을 규정함 (제1조의2)
- 나. 주취자 보호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07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 및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본청 및 사업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6.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 중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작성·갇추어 두어야”를 “작성·보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없도록 비공개처리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관재산의”를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결 시, 그 삭제된”을 “의결한 경우, 해당 삭제”로, “아니한 경우”를 “않는 한”으로, “재상정 할”을 “재상정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산관리총괄관은 시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시의회 보고 의무는 2015년 이후 의결된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결되어 시행 당시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유재산심의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의회 의원의 참여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심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행규칙 개정) 서울특별시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유재산심의회에 시의원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보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에 시의원 참여 근거 규정 신설(제4조제1항제6호)
- 나.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처리 규정 명확화(제4조제4항)
-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의회 보고 규정 신설(제11조제5항)
- 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보고의무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신설(부칙 제2조)
- 마. 공유재산심의회 시의회 의원참여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부칙 제3조)
- 바.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공개에 관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점을 신설(부칙 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08호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센터 운영, 불법 광고 정비,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 및 실적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대부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대부중개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대부업자 등”이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부업자의 불법·과장 광고를 예방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링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포함한다.

1. 지역 일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
2. 현수막, 전단지, 옥외광고물 등
3. 지역 방송매체
4.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③ 시장은 모니터링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알린다.

제5조(불법 대부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불법 대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 접수 및 처리
2.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에 대한 조사

3. 법 제9조의6에 따른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4. 제4조제2항 각 호의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
- ③ 시장은 신고센터의 업무 중 관할 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알린다.

제6조(불법 대부광고 정비)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불법 광고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단속한다.

- ② 시장은 불법 대부광고 정비 및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① 시장은 대부업자 등이 법령에 맞게 광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제사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표시 방법
 3. 불법 대부광고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불법 광고예방활동 지원) 시장은 대부업자 등의 과장·허위 등 불법 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대부업 교육계획) ① 시장은 대부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2. 교육대상
 3. 교육내용
 4. 교육방법
 5. 교육일정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업무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실적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 결과를 제9조의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

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 나. 등록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광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대부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다. 금융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의 체계적 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의 목적 명시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 용어 정의
- 나. 시장의 책무 (제3조)

대부업자의 불법·과장 광고 예방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과 지원 책무 규정
- 다.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제4조)

관할 구역 내 대부업자 등의 인쇄매체, 옥외광고물, 방송매체, 온라인 매체 등의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법령 위반 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
- 라. 불법 대부 신고센터 운영 (제5조)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 접수·처리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과 신고센터의 업무 규정, 관할 외 사항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
- 마. 불법 대부광고 정비 (제6조)

불법 광고의 정기적 정비 및 단속 실시 및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의무화
- 바.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제7조)

법령에 맞는 광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포함 내용 명시
- 사.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제9조, 제10조)

대부업자 등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교육 실적의 체계적 관리 및 성실 이수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서울특별시조례 제9709호**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형 로봇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급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 로봇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업

2. 지능형 로봇 분야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업
 3.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지능형 로봇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 및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형 로봇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능형 로봇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술육성·인재 양성·창업 지원·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서울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제1조~제2조)
- 나. 서울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제3조~제5조)
- 다. 지원사업 추진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제6조~제7조)
- 라. 전문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 규정(제8조~제11조)
- 마.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10호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규정한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도시형·소규모 농업 현장에 특화된 안전관리체계가 부족하여 고령 농업인·근로자 등의 사고·질병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기계 전복·추락·온열질환 등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성 진단·개선, 보험료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통합적 예방·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 차원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 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규정함(제6조)
- 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11호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 속 장애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권익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체부자유자가”를 “지체장애인이”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기관란 제2호 중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아동”을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아동”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기관란 제3호 중 “부랑자·결인·정신이상자·요보호여성”을 “부랑자·결인·정신장애인·요보호여성”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제2호 감면대상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장애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권익 개선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인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지체 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정신박약”을 “지적장애”로, “정신이상자”를 “정신장애인”으로 변경함.
- 나.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712호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표지판”을 “표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쓰레기봉투 등 필요물품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5.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을 위하여 홍보 및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인근 업소 대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여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확충을 위해 업소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동참업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성화 추진이 필요함
- 이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다양화하고, 이용의 날 지정 및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운영 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원내용을 보완함(제3조 제1호, 제3호 및 제5호)
- 나.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이용의 날 지정 및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제4조 제1항 및 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13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난안전신기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이 삭제되면서 ' 22.1월 제정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에서 혁신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신기술 중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 을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난안전신기술' 로 변경함(제2조제2호다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9714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여 소집한다.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안에서”를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조례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불요불급하거나 연 개최 횟수가 기준보다 미달하면 위원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또한 위원회 비상설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삭제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준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 사항 개정(제14조제1항 및 제3항)
- 나. 위원회 비상설에 따른 실무위원회 삭제 및 위원회 관련 조례 준용(제14조제5항 및 제6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15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을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 통보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이전에 서면으로 한다.
- ② 시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⑥ 시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별표의 제목 중 “제7조 제1항 관련”을 “제7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안 및 행정계획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검토 및 시장의 반영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 통보 절차 신설(제7조제1항)
- 나.중·장기 행정계획 통보 시점을 ‘수립 또는 변경 전’ 으로 일원화(제7조제3항)
- 다.위원회의 자체 안전 검토 조항 삭제(기존 제7조제3항 삭제)
- 라.조례 및 행정계획 검토 절차 및 기한 명확화(제7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16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 ‘시장’ ” 을 “ “시장” ” 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을 “고객” 으로 하고, 후단 단서 “다만” 을 “다만,”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사실” 을 “사실과 함께 제15조에 따른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될 수 있음” 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을 “협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을 “방해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반말, 고성, 욕설, 모욕감 또는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행, 업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당한 이유 없는 시비
3.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링크 등을 전송하는 행위
5. 업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당한 이유 없는 장시간의 통화 또는 면담
6.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행위
7. 감정노동 종사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여 공개하는 행위

제16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로 한다.

2. 금지행위 위반 고객과의 통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다만, 이 경우 종료하기 전에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금지행위 위반 고객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및 이용 제한

제17조제1항 중 “제16조 제2항” 을 “제16조제2항” 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120다산콜재단,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민원실 등, 서울특별시 내 감정노동자들의 근본적인 권리보호 향상과 인격적 보호를 위해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반영하여 금지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발생 시 업무중단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명시하여 악·강성 민원인과 같은 위반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폭언, 성적굴욕감 이외에도 살해협박, 반말, 고성, 화풀이성 시비 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제15조)
- 나. 감정노동 발생 시 선종료, 이용제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17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의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사 사장이 예산편성,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18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비대면 소비 트렌드의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원 가능 사업으로 조례 내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추가(제8조제7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9719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하계동)
2.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56(창동)

제5조(관람료 등) 과학관의 전시물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기획 전시물 관람료는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조에 따른 특별기획 전시물 관람료 관련 사항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은 관람객 대부분이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과학관이나 학생 대상 시설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학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하고자 함.
- 또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명칭 및 위치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추가함(제3조)
- 나. 관람료를 무료로 함(제5조)
- 다. 관람료 감면 조항을 삭제함(제6조)
- 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문구를 정비함(제16조 및 제17조)
- 마. 권한의 수임자를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으로 명확히 하고 위임사항에 관람료 감면사항을 삭제하며 특별기획 전시물 관람료 관련 사항을 추가함(제18조)
- 바. 별표를 삭제함(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9720호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음”이란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배기장치 또는 기타 부속장치의 작동에 따라 발생하는 음향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예방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자치구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시와 자치구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륜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및 점검 계획 수립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기술적·정책적 분석 및 자문
3.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
4. 이륜자동차 이용자 대상 소음 저감 협력 방안 논의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
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및 자치구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3.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4. 도로교통 및 자동차 소음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및 자치구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사업)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단체, 관계기관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최근 서울시에서 이륜자동차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개조 및 야간 소음으로 시민 생활환경 침해가 심각해져 이륜자동차 소음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 법령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소음 관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특수한 도시 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소음 관리 기본체계 확립 및 관리계획 수립,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 강화, 교육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제1조)
- 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기본체계 확립(제2조~제4조)
- 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제5조)
- 라.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운영(제6조)
- 마. 교육 및 지원(제7조)
- 바. 홍보사업 운영(제8조)
- 사. 행정·재정적 지원(제9조)
- 아. 표창제도 도입(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21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임직원 채용,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제33조제2항제1호)
- 나. 공사 사장이 예산편성, 임직원 채용,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제33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22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 돌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2. 반려동물 위탁보호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의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반려동물의 소유자등 이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반려동물 돌봄 지원 사업과 제도에 대해 시민이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질병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돌봄에 필요한 시책 수립, 경비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5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723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부터 만리동1가 83까지 일대에 조성된 서울로 내 고가보행로 및 본선 연결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로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을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로를 보행”으로, “보행환경을 조성”을 “보행권을 보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를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리차량 이외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
 2.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내려서 끌고가는 경우 제외)
 3. 그 밖에 유아차,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실외이동로봇 이외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장치의 통행
- ③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거리가게에 의한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서울로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로 7017은 보행자전용길로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로 보행자전용길’ 을 정의함(제2조제4호 신설)
- 나. 시장의 책무로 시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서울로를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보장하도록 함(제3조)
- 다. ‘서울로 보행자전용길’ 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제12조제2항)
- 라. 서울로에서 거리가게에 의한 상행위는 공익에 부합한 행사의 경우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제12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24호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최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민간정원 확대 및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을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에 포함(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25호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로 정하는 중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2. 학술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시행규칙 제7조의5로 정하는 경우

제9조의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도식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에 의한 피해

제13조제3항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시행규칙 제7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

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 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2023년 12월 13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한 보유동물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보유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농업·임업피해, 재산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함(제9조의3 신설)
- 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726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자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 조직 구성 및 운영
2.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3.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4. 재난·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사무위임(제17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		구청장, 동부·중부·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가. 자연휴양림의 타당성 평가 및 지정 신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의2	
나.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 같은 법 제14조	
다. 자연휴양림 조성(시설 설치) 및 관리	◦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제21조의5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안전관리 조직 구성, 안전점검 방법 및 주기, 재난사고 조치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제8조제2항)
- 나.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8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27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따른 국가유공자” 를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배려가 체감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 적용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로를 함께 한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함(제5조제2항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728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세계보건기구는 슈퍼 박테리아로 인해 2050년 1,000만 명의 사망자와 누적 100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는 등 폐의약품의 잘못된 처리는 미래 세대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폐기물관리법」 등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이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 사무를 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국한하고 있어 폐의약품 처리의 중요성에 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3년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추진 계획」(기후환경본부)을 수립하고,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등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우편함을 활용해 폐의약품 수거를 시작한 결과, 2023년 183톤에서 2024년 241톤으로 증가해 협약의 효과성을 입증하기도 함
- 다만, 관련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정책의 홍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많은 민관 공동 협의체 확산과 더불어 서울시가 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지원과 홍보 강화를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제7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729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원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은 900여 개에 이르며, 이용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작은도서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장서·프로그램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명시함(제28조제1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730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4조제7호를 같은 조제8호로 한다.

7.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체육분야 전반에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업을 시행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용도에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설함(제4조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731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특정인을 비방하거나”를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 비하, 모욕, 비방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제6호 중 “욕설”을 “성희롱·폭언·욕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의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성별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인터넷 홈페이지인 온라인 공간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성희롱·폭언 등에 대해 삭제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게시물 관리 조항을 규정으로써 성평등과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 비하, 모욕하거나 성희롱·폭언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게시물 관리 규정을 강화함
(제5조제4호 및 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732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개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의 원활한 관리 및 출납을 위해 별도의 분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박물관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박물관 자료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한 별도의 분임 자료관리관 등 지정(제10조의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33호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제2항제1호 중 “홍보하는”을 “홍보하거나 비방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홍보 소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선정 배제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제6조제3항)
- 나. 위원회 심의 시 홍보 소재 배제 사유 구체화(제12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3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 ① 시장은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이하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립체육시설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립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시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안전·활용에 관한 사항
4. 시립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립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시장이 시립체육시설의 각종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함으로써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5년마다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제3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735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8조의3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 시장은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체육교류 사업
2.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 사업
3.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사업
4.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의2(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의 체육은 이미 국제적으로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인정받고 있고, 태권도 등 스포츠 한류가 각광받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교류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국제 체육교류를 위한 근거 마련하고자 함.
- 시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년 중 일부 날짜를 ‘스포츠데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에 시민이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제18조의3).
- 나. 스포츠데이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스포츠데이에 시립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는 자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736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

제12조제1항제1호 중 “(3월~10월) :” 을 “(3월~10월):”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월) :” 을 “2월):” 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우수한 미술관자료를 확보, 소장하기 위하여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관자료수집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장된 미술관자료의 수집현황 분석
3. 수집전략 구축 및 수집제도 개선 방안
4. 그밖에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제1항 중 “있다.” 를 “있으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남현동)

명 칭	위 치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상암동)
서울시립 백남준을 기억하는 집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12-1 (창신동)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평창동)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서울 도봉구 마들로13길 68 (창동)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9길 53 (독산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무료 관람 대상으로 명시하여 병역에 대한 존중과 예우 강화를 강화하고자 함
- 중장기 미술관 자료수집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취약성을 보완함
- 소장미술관자료의 원활한 출납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분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 시설을 현행화함

2. 주요내용

- 가. 관람료 면제대상에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 추가(제9조제1항제18호)
- 나.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 수립 시 세부 내용 신설(제21조제1항 및 제2항)
- 다. 소장미술관자료의 관리·출납을 위해 별도 책임관리자를 지정할 근거 마련(제23조제1항)
- 라. 운영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9737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지원시설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시장이 육성·지원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해당 시설을 추가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육성·지원해야 하는 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을 추가함(제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38호

서울특별시 공영장레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공영장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 조례는 국가보훈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해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곤란 및 무연고유공자 장례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서 유공자를 포함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24년 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장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음.
- 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곤란 및 무연고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 예우를 제공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3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함.
- 나. 조례 제3조 제4항에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받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739호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식생활 관리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횃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내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고(高)당류 간식의 유행으로 아동·청소년의 당류 과다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손목닥터 9988 앱등)을 활용한 올바른 당섭취 습관 형성 정책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고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참여 및 기여도에 따른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식생활 관리사업을 영양관리사업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함.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 나. 시민이 영양식생활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3항 및 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740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종전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 일자리 관련 사항이 2023년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던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정비함. (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41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자”를 “자 또는 여성관련시설 내 공간을 사용하려는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정하는 경우 제13조의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경제활동 지원, 권익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 관련 시설 및 공간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일자리 연계,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여성관련단체 및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함.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수의의 방식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여성 관련 단체 및 시설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의 방식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확한 규정을 신설,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여성관련시설 운영주체에 대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 권익 신장, 성평등 실현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짐. 이는 여성정책의 지속 가능성, 실효성, 행정적 연속성 확보에 기여하고, 향후 서울시 양성평등 정책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가.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또는 여성관련시설 내 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로 규정함(제14조제1항)
- 나. 여성관련시설의 사용허가를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4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42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및 처우개선 추진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제13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743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종전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 일자리 관련 사항이 2023년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던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정의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정비함(제2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744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를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로, “으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를 “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7제1항 중 “시에”를 “서울특별시에”로, “자가”를 “사람이”로, “서울시”를 각각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9(신혼부부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0(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① 시장은 결혼·살림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시”를 “서울특별시”로, “저출산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저출산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신혼부부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혼부부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4조의9)
- 나.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4조의10)
- 다. 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부칙)
- 라. 그 밖의 문구 정비

◆ 서울특별시조례 제9745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로, “언어야” 를 “받아야”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인사,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소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울시설공단 사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소관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제27조제2항제1~3호)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나. 공단 이사장이 예산편성, 인사,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소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제2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46호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임직원 채용,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제27조제2항제1~3호)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나. 공단 이사장이 예산편성, 임직원 채용,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제2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47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배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호”를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순찰로봇)를 설치 또는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4호)
- 나.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배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48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매년”을 “2년에”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진흥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진흥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1조제5항”을 “영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매년 공고를 통해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대부분이 기존 감리업체이며 서류상 변동도 거의 없어 반복적인 신청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연간 해체공사감리자 수요 건수가 명부 등재자 수에 크게 미달하여 업무 배정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바, 모집공고주기를 현행 매년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기회 균등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등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모집공고 주기를 현행 매년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변경함(제7조제1항제1호).
- 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함(제9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49호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진입불가·곤란지역”을 “진입불가·곤란지역·전용구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진입불가·곤란지역”을 각각 “진입불가·곤란지역·전용구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소방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을 위한 핵심 공간임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주정차,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전용구역의 기능이 저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을 명확히 정의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4호)
- 나. 시장의 책무 및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함(제3조 및 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50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횡단보도 쉼터, 스마트쉼터(횡단보도 쉼터 및 스마트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최근 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시 곳곳에 스마트쉼터가 설치되고 있으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스마트쉼터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포함시켜, 그 설치와 관리·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스마트쉼터’를 추가함
(제2조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751호

서울특별시 지하철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철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지하철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반침하 사고예방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회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로 한다.

제12조 제목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을 “(지하개발 사업 등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를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매월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을 “조사에서 또는 그 밖에 관내 도로에서 지하시설물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지반침하나 공동”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하안전을 위한 기술인의 배치 등) 시장이 발주한 지하철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철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후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기술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 시켜야 한다.

1. 특급기술인: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2. 고급기술인: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

제13조의 제목 “(공동조사 대행 등)”을 “(공동조사 주기 및 대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를 “주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제5조제5호에 따라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등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시 관련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관련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정보공개) 시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시장은 제12조의2의 적용으로 증가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지하안전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반침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에 ‘지반침하 사고예방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5호).
- 나. 지하안전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회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제6조제1항).
- 다.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져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매월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함(제12조제1항).
- 라. 공동조사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관내 도로에서 지하시설물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지반침하나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토록 함(제12조제3항).
- 마.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포함토록 함(제12조의2).
- 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주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함(제13조제1항).
- 사.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아.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토록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자. 제12조의2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장은 제12조의2의 적용으로 증가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부칙).

◆ 서울특별시조례 제9752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
2. 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될 것
3.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질 것
4.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될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시책
 3.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4.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5.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방안
 6.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가이드라인)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령화 인공지능 규율,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에 인공지능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정책 관련 서울특별시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제1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5.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
 6.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함
-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편향성,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글로벌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률 제정을 논의 중이나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회의 인공지능 기본법률 제정을 촉진시키고 서울시 조례 운영 경험을 통해 현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과 기본원칙(제1조~제2조)
- 나. 용어의 정의(제3조)
- 다. 시장의 책무(제4조)
- 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제6조)
-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8조)
-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9조~제10조)
- 사. 지원사업(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53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을 “임대주택” 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계획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15호 전단의” 를 “제15호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15. 존치관리구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특례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계획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제5조제1항제4호)
-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존치관리구역에서 시행하는 안심주택,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 등을 추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제5조제1항제1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754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인사,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사 사장이 예산편성, 인사,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제3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55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50세대”를 각각 “30세대”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의 품질점검은 300세대 미만인 경우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을 실시하며, 300세대 이상인 경우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세대수의 100분의 1(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정수로 올린다) 이상을 실시한다. 단, 1,000세대 이상인 경우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10세대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의 점검대상에 비추어 이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품질점검 대상을 1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함(제14조제2항)
- 나.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의 품질점검 대상을 300세대 이상인 경우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실시하도록 확대하였으며, 1,000세대 이상인 경우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10세대 이상을 점검하도록 함(제15조제5항)
- 다. 개정 조례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56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 또는 보수·보강 등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5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

제5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 안전관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업무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관리 지원 업무에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추가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 또는 보수·보강 등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대상에서 제외함(5조의2제1항)
- 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업무 수행의 범위를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1항제3호)
- 다.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제5조의2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57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주택 중”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으로서”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4항”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택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공공주택 중 ‘소형임대주택’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이 개편됨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의 정의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내용상 종전과 동일한 정의를 유지함(제2조제1호마목)
- 나. 임대주택 용적률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58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를 “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를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각각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실시하도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권 교육의 연간 횟수와 교육의 위탁에 관해 명시하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택관리업자등” 을 “관리주체등” 으로 변경(제2조제4호 등)
- 나.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등에게 교육을 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법인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5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협상 대상지를 선정한다.
- ② 시장은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협상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전협상을 통한 민간개발활성화로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협상대상지 선정 시,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협상 대상지를 선정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60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8963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2년” 을 “4년”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조례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수요도 여전히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한시적인 특별법이라는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시행 후 ‘2년’ 에서 ‘4년’ 으로 연장함(조례 제8963호 부칙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함(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6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조합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항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투명한 조합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신설(제52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6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0,000㎡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 중”을 “감정평가법인등 중”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을”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구역면적 10,000㎡미만의 정비사업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중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종료된 후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제9항제2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3]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① 평가항목 :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수행실적(배점 : 20점)

-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계약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함
- 평가건수(10점)

구 분	상위20%이내	20%초과~40%	40%초과~60%	60%초과~80%	80%초과~100%
평 점	10	8	6	4	2

- 평가금액(10점)

구 분	상위20%이내	20%초과~40%	40%초과~60%	60%초과~80%	80%초과~100%
평 점	10	8	6	4	2

② 평가항목 : 감정평가사 수(배점 : 15점)

-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수 평가기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서울시 소재 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수를 평가함
- 평가배점(15점) - 서울시 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구 분	20명 초과	16~20명	11~15명	6~10명	5명 이하
평 점	15	14	13	12	11

③ 평가항목 : 기존 평가참여 규모(배점 : 30점)

-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청장이 선정하여 평가한 정비사업 관리처분(중전, 중후, 세입자 손실보상) 평가금액 및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단, 모든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추정금액(중전, 중후, 세입자 손실보상)을 기준으로 평가함.
- 실적 누락시 누락 1건당 5점 감점함
- 기 참여 평가총액(15점)

구 분	하위 20%이내	하위 20%초과~40%	하위 40%초과~60%	하위 60%초과~80%	하위 80%초과~100%
평 점	15	12	9	6	3

- 기 참여 평가횟수(15점)

구 분	하위 20%이내	하위 20%초과~40%	하위 40%초과~60%	하위 60%초과~80%	하위 80%초과~100%
평 점	15	12	9	6	3

④ 평가항목 : 행정처분 횟수(배점 : 15점)

-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 및 서울시소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함(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 감정평가법인은 업무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횟수를 기준으로,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견책 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업무정지,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횟수를 2배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구 분	없음	3회 이하	4~6회	7~9회	10회 이상
평 점	15	12	9	6	3

⑤ 평가항목 :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배점 : 10점)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감정평가법인의 보수기준의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평가에 참여한 법인의 제안가격을 평가함

구분	기준요율 평가수수료의 80%금액	감정평가법인이 제안한 수수료(금액) (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의 80%초과 ~ 100%미만)	국토부고시 기준요율 적용 수수료(금액) (100%~120%)
평점	10점	평가점수 = {(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 - 제안금액)/국토부고시 기준요율금액} × 50	0점

⑥ 평가항목(비계량) :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배점 : 10점)

-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평가구역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이 추천한 전문가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평가대상	평가항목														
	업무추진계획(25%)					인력투입계획(25%)					사후서비스 제안정도(50%)				
평 점	10	8	6	4	2	10	8	6	4	2	10	8	6	4	2

※ 시장은 구청장의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 및 “감정평가법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1회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
-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시장이 별도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감정평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 선정 후 평가의견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
- 감정평가법인의 실적 평가기간을 정하고 및 실적 누락 시 감점 조치함

2. 주요내용

- 가.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 및 감정평가법인으로 정비함
(제12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제42조제9항, 별표3)
- 나. 분양공고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업의 규모를 재개발구역 최소 지정기준인 1만 제곱미터로 함(제32조제1항)
- 다. 구역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정비사업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경우 시장이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제35조제1항제2호)
- 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평가결과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제35조제2항 및 제3항)
- 마. 감정평가법인 실적 평가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하고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항을 신설함(별표3 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63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중 “시(자치구 포함),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 및 시 소속 자치구
2. 대한민국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시 소속 지방공사와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 소속 출자·출연 기관.

제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개 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과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대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 공지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9247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결정·인가·협의·승인·심의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공임대주택의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도모하고,
- 부칙을 개정하여 공개공지 설치 기준 개정 내용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 예외 대상을 기존 서울시(자치구 포함)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서울시 소속공사와 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공익 실현 및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7조제5항에 각 호를 신설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기관·단체를 각 호에 명시함
(제17조제5항)
- 나.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공지의 면적 기준 완화(제26조제7항 신설)
- 다. 공개공지 설치 기준 개정 내용의 적용 시점 명확화(부칙 제9247호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764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을 “경제상태, 생활양식 및 정신건강”으로, “실시”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으로 한다.

제12조 중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 시행과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지원”으로, “체결 할”을 “체결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고립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지역사회 보건·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고립청년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련 통계정보 수집·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제7조제1항)
- 나. 정신건강 분야 지역사회 연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65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각 호 사항에 대해 점검·권고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비율”을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범위”를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7. 청년 제안 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제안 정책의 이행 결과를 청년 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과 점검·권고 기능을 구분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제9조제2항)
- 나. 청년정책 제안 및 추진현황 점검 문구 추가(제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 다. 청년 제안 정책 추진현황 점검 평가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제3항)
- 라.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제9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66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디자인전문회사의 보험 가입 지원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디자인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겪는 지식재산권 침해, 대금 미지급 등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하고자 함
- 이에 디자인 지원사업에 보험 가입 및 경비 지원을 명시하여 디자인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사업에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험 가입 및 경비 지원 사항을 신설함(제6조제6호 신설 및 제6조제2항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76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계획·관리”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시안전, 도시계획, 도시관리”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생태현황”을 “재해영향 및 도시생태현황”으로 한다.

제50조제2호라목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중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을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지하안전”으로 한다.

별표 17 제4호가목 중 “별표 12 제1호다목”을 “제50조제2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산업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에 따라서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며,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은 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산업단지에서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 (2008.1.31. 기준)	지상층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	용적률
10~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265% 이하
20~3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280% 이하
30~4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295% 이하
40~50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	310% 이하
5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상	325% 이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서울시의 도시 계획 및 관리 기본방향에 ‘도시안전’을 추가하고자 함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영향’을 포함하고자 함
- 시도시기획위원회 위원 중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산업복합건물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고자 함
- 산업단지에서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기존 공장비율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상층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내용에 도시안전을 추가함 (제2조제1항)
- 나. 시도시기획위원회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영향을 추가함 (제4조제4항)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 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별표 17 제4호나목의 용적률을 적용함 (제50조제2호라목)
- 라. 시도시기획위원회 위원 중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55조제3항제3호)
- 마. 산업단지에서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단지 관련 계획에 따라 별표 17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상층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별표 17 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768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사 사장이 예산편성,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제31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69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피해자”란 급발진의심사고로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발진의심사고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기록장치 시범·부착)”을 “(기록장치 시범·부착 및 데이터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받을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주장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나, 급발진 사고로 인한 차량 결함 및 피해자 입증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피해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급발진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구축, 그리고 기록장치 기록 데이터 기반의 급발진 의심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제3호)
- 나. 급발진의심사고 통계 구축 및 공개에 대한 조항 신설함(제4조제2항)
- 다. 기록장치의 기록 데이터 분석에 대한 조항 신설함(제7조제2항)
- 라.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전문가 등 자문 및 예산 지원 조항 규정 (제9조)
- 마. 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조항 규정(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70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제7조”를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로, “지정시”를 “지정 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로, “제작·발급 및 봉인”을 “제작·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20조”를 “「자동차관리법」 제20조”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대행자지정”을 각각 “대행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과반수 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이 2024년 2월(시행 2025년 2월)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되어 조례 중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변경하고 대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운영적인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 중 등록번호판의 봉인 업무를 제외하고 제작·발급 업무로 함(제2조제1호)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제6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71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학로를 개선 및 관리할 수 있고, 자치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어린이 통학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학로는 폭이 매우 좁고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간 내 통학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 (제6조의2 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72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 후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공자전거 ‘파릉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민 이동편의 증진과 가족 간의 여가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누적 대여건수가 2억 건을 눈앞에 두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대상별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자녀가구에 관한 요금감면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자전거 이용 시 다자녀가구에 대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뿐만 아니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항목을 추가 신설함
(제12조의3제2항8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77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로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선순위 유족(1인)에게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하기로 함

2. 주요내용

- 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신설
(제7조제1항제1호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774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을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5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증진계획의 시행 의무를 명시하여 사업의 실행 의지를 강화하고자 함.
-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추가하는 한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실태조사의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반영을 의무화함(제5조제3항)
- 나.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연계 체계 구축 현황 및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함(제7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의2)
- 다.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을 규정함(제7조제2항)
- 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의무화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75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앞의 “제2장 시설의 이용”을 삭제한다.

제3조, 제4조는 각각 제4조, 제5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에서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교육원”으로,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설치 및 운영

제5조(중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현동 1063번지 6호”를 “남현1길 38-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운영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운영)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4호·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을 지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시설의 이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제2호”를 “제5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 를 “제5조” 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5조” 를 “제5조의2” 로 하며, “운영·개관” 을 “운영”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잘못된 이용으로 학생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이 매우 중요하여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교통문화교육원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띄어쓰기, 조의 순서 등 기타 조례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통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운영”을 추가함(제5조제4호)
- 나. 시장의 책무를 정비하여 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명시함(제3조)
- 다. 교통문화교육원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띄어쓰기 및 조의 순서 등 조례를 정비함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76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이하 “대중교통 사고”라 한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모든 시민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 ① 시장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대책(이하 “비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비상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 차량 등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 및 투입 방안
2. 주요 노선의 감축·우회 등 운행 조정 기준
3. 교통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협조체계
4. 사전 안내 및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
5. 그 밖에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교통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차량 운용, 비상 인력지원, 연락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비상대책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또는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대중교통 이용중 발생한 사고피해에 대한 시장의 지원의무, 시민의 권리, 보험금 청구에 대해 명시하는 한편 대중교통 비상 운행 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 복구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 (제3조제2항)
- 나.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추가함(제4조제2항)
- 다.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의2)
- 라.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에게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함(제19조제1항)
- 마.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중교통 운행대책에는 예비 차량 확보, 주요 노선 조정 기준,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시민 대상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제19조제2항부터 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77호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저출산 대응 정책)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2. 임신·출산 지원
3. 양육·보육·교육 지원
4. 일자리·주거 지원
5. 다자녀 가정 지원
6.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
7. 그 밖에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7조(고령사회 대응 정책)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2. 건강증진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4. 여가·사회활동 장려
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8조(인구정책)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단체 지원) ①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의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책 간 연계성이 미흡하며, 단기적 대응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 간 통합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연계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연계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제2조)
- 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4조)
- 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마. 저출산 대응정책·고령사회 대응정책·인구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8조)
- 바.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제9조)
- 사. 조사 및 연구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아. 협력단체 지원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78호**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한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목적)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뜻한”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로, “단체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를 “단체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시행계획” 을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 이라 한다)” 으로, “사항” 을 “사항(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상담·치료·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5조제3항” 을 “제5조제4항” 으로, “협조할 수 있다” 를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내” 를 “이내의 위원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당연직은 재임 기간)으로 하며,” 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으로 하며, 두 차례”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 위원회” 를 “전임위원의”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 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25. 1. 21.) 취지에 맞게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정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기존 시행계획 수립을 예방대책 수립으로 변경하고,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제5조제2항제1호)
- 나. 지역위원회가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제5조제3항)
- 다.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779호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 중 “기업,연구소”를 “기업, 연구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활성화 및 입주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및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 중 호선된”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담당사무관이 맡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을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1부시장과 디지털미디어시티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국내외 기업의 경영자
 3. 대학교수
 4. 그 밖에 디지털미디어시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제4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 규정 당시와 기능이 달라진 부분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재정비함(제9조, 제11조)
- 나. 공공성이 강한 단지관리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규정을 재정비함(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80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형 키즈카페”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을 “서울형 키즈카페를”로 하며, 제7조의2제2항 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을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대상과 이용료는 시설형태와 원가계산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에 대하여”를 “중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다만, 비상설형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 시설유형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시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아동’ 인 경우에 적용한다.

대 상	감면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중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 및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중 특수임무유공자의 직계비속 및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제1호 중 의사자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의 직계비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다둥이 행복카드” 를 소지한 가족 13.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입장료 전액 감면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실내에 한해 운영하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실외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신설하며, 현행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료 감면기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다른 어린이놀이시설과 본 조례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실내외를 불문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제2조제5호)
- 나.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변경 표기(제7조의2)
- 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뿐만 아니라 이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비상설형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료는 사전에 시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위임사항을 추가(제7조의2제2항)
- 라. 민간 키즈카페의 지원범위 대상의 명확화 및 중복개념 삭제(제7조의3)
- 마.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 기준 대상을 실제 이용료가 부과되는 대상인 아동을 중심으로 표기되도록 변경(별표)
- 바. 그 밖의 문구 정비

◆ 서울특별시조례 제9781호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심야약국” (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야간약국”을 “심야약국”으로,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야간약국”을 “심야약국”으로, “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을 “(심야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 등에게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를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로, “야간약국을”을 “심야약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을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야간약국의 관리)”를 “(심야약국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간약국 근무 약사”를 “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야간약국”을 각각 “심야약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야간약국”을 “심야약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위임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정한 운영시간 명시 및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제1조)
- 나.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정한 운영시간 명시(제2조)
- 다. ‘공공 야간약국’ 을 ‘공공심야약국’ 으로 용어 변경(제명, 제2조~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82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및” 을 “「지방세기본법」 및” 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 25. 1. 1.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세 기본 조례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선정 대리인 업무를 현행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하여 조례 일부 조문 삭제 (제8조 ~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83호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로 한다.

제6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를 “서울특별시” 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납세자 권리현장 등” 을 “선정 대리인” 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4조(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4항에 해당하여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불복청구(이의신청)일자, 납세자, 선정 대리인,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이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납세자 권리현장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 그 밖의 행위는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지방세 불복민원에 대한 선정 대리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 추가
- 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관 신설
 - 선정 대리인 위촉 요건,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 등 규정 신설
-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등

◆ 서울특별시조례 제9784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선박의 한강아라호란을 삭제하고, 별표 2 제7호 여의도한강공원의 월정기권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월정기권	
여의도샛강쪽(4, 5주차장)	72,000~100,000원
한강본류호안쪽(1, 2, 3주차장)	91,000~120,000원

2) 여의도한강공원 1, 2, 3, 4, 5주차장 중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홍보관광 유람선인 ‘한강아라호’ 매각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수상이용시설 중 ‘한강아라호’를 삭제하고,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주차수요 대응을 위해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 적용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상이용시설 선박 중 ‘한강아라호’ 삭제(별표 2 제1호)
- 나.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 적용에서 제외(별표 2 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785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장의 제목 “보칙” 을 “서울건강총괄관의 운영” 으로 한다.

제28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8조의2를 제33조의2로 하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한다.

제5장에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서울건강총괄관의 위촉) ① 시장은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의 건강을 연계한 정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건강총괄관” 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 언론,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석사,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9조(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등) ①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자문
2.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
3.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자문
4.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서울건강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서울건강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울건강총괄관의 임기) 서울건강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건강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서울건강총괄관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건강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서울건강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지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건강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시정 전반에 건강 관점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건강총괄관’ 위촉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간 연계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계 관련 사항을 정함(제5조제3항)
- 나.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8조 ~ 제3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86호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을 “공공”으로, “위하여”를 “위한”으로, “규정함”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차상위 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센터의 설치)”를 “(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위하여 광역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역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평가에 관한 사항
2.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자치구별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과 교육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6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을 “광역 센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로,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심리지원센터”를 각각 “광역 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치 되어”를 “설치되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을 “광역 센터를 민간위탁하는”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심리지원센터”를 “자치구별 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구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리지원센터”를 “시장은 광역 센터”로, “구하기 위하여 각 심리지원센터”를 “위해 광역 센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권역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 및 설치 주체 변경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센터 설치 규정에서 권역별 설치 삭제(제4조)
- 나. 심리지원센터별 주요 업무 및 기능 추가(제4조)
- 다. 조직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권역별 규정 삭제(제6조)
- 라. 센터 설치 관련 사업비 지원근거 신설(제7조)
- 마. 그 밖의 문구 및 약칭 정비

◆ 서울특별시조례 제9787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한” 을 “위해” 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를 “수립·시행하여” 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자살시도자 등” 을 “자살시도자등”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 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심리상담·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 을 “지원 및 사후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권역별” 을 “체계적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구청장과” 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 한다.

3.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자살예방위원회” 를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 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되고, 해당 안전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맡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위촉하되,” 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제2호가목에서 사목까지의 분야별”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중 “되고 서기는 자살예방사업 관련 팀장이 된다”를 “맡고 서기는 자살예방팀장이 맡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한다.

1. 당연직

- 가. 행정1부시장
- 나. 시민건강국장
- 다. 안전 관련 실·국·본부장

2. 위촉직

- 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나.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의 장
- 다.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 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자살예방”을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를 “제3조제3호”로 한다.

-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시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을 “자살시도자등을 위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시는 프로그램을”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을 “자살자·자살시도자등”으로 한다.

- 1.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 2.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
- 4. 그 밖에 자살시도자등의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7조의 제목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을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살유해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자살유발 정보예방체계”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자살예방 교육)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5456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자살예방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자살예방 교육 개정사항 반영으로 조례 실효성 강화

2. 주요내용

- 가. 자살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제9조)
-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인 ‘자살예방 교육’ 신설(제21조)
- 다. 시행일 및 자살예방위원회 존속기한 명시(부칙 제1조, 제2조)
- 라. 그 밖의 문구 정비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711호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선정 대리인

제16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자격구분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e-mail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동의내용

- 본인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서울특별시가 선정 대리인 지정통지를 한 때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지식기부를 통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지정통지 및 관리 등
- 수집대상 개인정보 :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 상기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해당 □ 안에 √ 표시)

- ☐ 모두 동의함
- ☐ 모두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20 . . .

위 동의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사건 지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 사건현황과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0 . .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불복 청구인 (이의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과세연도</th> <th style="width: 15%;">기분</th> <th style="width: 20%;">세목</th> <th style="width: 20%;">세액</th> <th style="width: 25%;">과세예고통지·세무조서결과 통지·부과처분 등을 송달 받은 날</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rowspan="4">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과세연도	기분	세목	세액	과세예고통지·세무조서결과 통지·부과처분 등을 송달 받은 날																	
과세연도	기분	세목	세액	과세예고통지·세무조서결과 통지·부과처분 등을 송달 받은 날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가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불복청구인 (이의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 2.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 재산, 소득, 자산, 매출액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행정기관명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①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 용

○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 : ○○○ 귀하

1.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성명		자격	
사무실			
연락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 대리인 용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 ○○○님이 '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		접수번호(사건번호)	
과세연도·세목·세액		연락처	
주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관인생략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illegible]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지방세 불복민원에 대한 선정 대리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이관 신설
- 선정 대리인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서식 신설

◆ 서울특별시규칙 제4712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 25. 1. 1.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규칙 일부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업무를 현행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하여 시행규칙 일부 조문 삭제(제14조2 ~ 제14조의5)

나. 시행규칙 별지 서식 삭제(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8호서식)

◆ 서울특별시규칙 제4713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한강아라호란을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준 및 이용료				이용시간	비 고
주차요금	1회 주차(1구획)		1일 최대	월정기권	06시 ~24시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 한강공원	최초30분 2,000원	300원	15,000원	여의도샛강쪽 (4, 5주차장) 80,000원 한강본류호안쪽 (1, 2, 3주차장) 100,000원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양화·망원·난지·강서한강공원	최초30분 1,000원	200원	10,000원	50,000원		

※ 여의도한강공원 1, 2, 3, 4, 5주차장 중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최대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제1호 중 “한강르네상스호 및 아라호”를 “한강르네상스호”로 하고, 제2호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의 제목 “한강르네상스호·한강아라호 대여”를 “한강르네상스호 대여”로 한다.

타.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 시간에 대한 이용료	30	다만,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은 적용 제외
---	----	---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홍보관광 유람선인 ‘한강아라호’ 매각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규칙에 명시된 수상이용시설 중 ‘한강아라호’를 삭제하고,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주차수요 대응을 위해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강아라호’ 관련 규정 삭제(별표 1 제1호, 별표 2제1호 및 제4호)
- 나.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 적용에서 제외(별표 1 제7호)
- 다.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은 3시간 초과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서 적용 제외(별표 2 제2호)

◆ 서울특별시규칙 제4714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3조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구분	대 상	이용요금
입장료	아동 (0세 ~ 9세)	5,000원/인/회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		

※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학생 전용시설)와 결합형인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입장 가능

※ 주된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시설 안의 어린이 이용공간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편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존 이용 대상 및 이용요금 유지 가능

※ 상설형이 아닌 가변형, 비상설형인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용료를 별표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표기(제2조, 제3조)

나. 가변형, 비상설형인 경우 이용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별표)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